

국제농업협력사업 []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
국제산림협력사업 []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
신청인	명칭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	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	
	소재지		
담당자	성명	부서명	직위
	전화번호	팩스번호	전자우편주소

「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 제31조의2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국제농업협력사업 수행 계획서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수행 계획서 2. 인력 보유 현황 및 배치 계획서 3. 업무수행 체계에 관한 서류 4.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5. 국제농업협력 또는 국제산림협력 관련 최근 3년간 수행한 연구 또는 사업에 관한 실적 및 예산·결산 현황에 관한 서류(연구 또는 사업 활동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서류를 말합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및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)	

행정정보 공유이용 동의서

신청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유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유의 사항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 「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 제31조의2제5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같은 법 제31조의2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.

처리 절차

신청서 작성

신청인



접수 및 평가

(농림축산식품부
또는 산림청)



지원기관 지정

(농림축산식품부
또는 산림청)



지정 통보

(농림축산식품부
또는 산림청)